

수탁자 책임 활동 이해상충발생방지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회사에서 제정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근거하여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회사, 임직원, 투자자 상호 간 또는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에 발생 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및 운영)

- ① 회사는 내부통제조직(컴플라이언스팀) 및 의사결정 협의체(수탁자책임활동위원회)를 통하여 관여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고, 업무의 적법성·투명성 등을 위하여 조직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 ② 수탁자책임활동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대표이사, 유가증권부문장, 주식운용담당본부장, 채권운용담당본부장, 리스크관리본부장, 준법감시인으로 구성하며, 본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사안에 따라 위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3조(관여활동 수행에 따른 이해상충발생 방지 기본원칙)

- ① 회사는 투자회사에 대한 관여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 및 고객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의 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회사는 투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수행할 『의결권 행사 지침』을 준수하며, 해당 지침을 사전에 공개한다.
 2. 회사는 독립적인 제3의 전문기관이 제시하는 의결권 의안분석 보고서의 권고 의견을 참고하여, 회사의 고객 및 수익자 이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
 3. 회사는 관여활동(의결권 행사 포함)의 내용 및 결과를 회사의 웹페이지 또는 별도 양식을 통해 공개하여, 투자자에게 그 활동과 관련한 투명성을 제고한다.
 4. 회사는 투자회사에 대한 관여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부서와 분리하거나, 관여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부서의 겸직을 금지한다. 다만,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임직원(대표이사,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은 제외한다.

5. 회사는 이해상충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실을 회사의 고객 및 투자자에게 알리고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적정한 수준으로 해소되기 전까지 거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6. 회사는 상당한 이해상충의 가능성을 완화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관련 계약 및 거래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② 회사는 투자회사에 대한 관여활동(의결권 행사 포함) 과정에서 회사와 투자자 및 고객간에 이해상충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로는 다음의 각 호가 있다. 다만, 이에 한정하지는 않으며 제1항 및 제2항 각호에서 발생한 이해상충 문제 또는 향후의 이해상충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조제1항의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의결권 행사 및 관여활동 시 책임이행 수준을 정한다.

1. 회사가 회사의 소유지배관계에 있는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2. 회사가 (잠재적) 사업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 또는 그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3. 회사의 소유지배관계에 있는 계열사와 사업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4. 회사의 고위 경영진,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임원으로 재임 중인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5. 회사의 소유지배관계에 있는 계열사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을 사외이사후보로 추천하는 경우

제4조(준수여부 점검)

①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는 투자회사에 대한 관여활동 시 관련법규 및 『내부통제기준』, 정보교류 차단장치 등의 준수여부를 정기·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검결과 임직원의 위규행위가 적발된 경우 해당 임직원에게 대한 제재 및 내부통제제도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실행하여야 한다.

제5조(기 타)

그 밖에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이 지침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자본시장법령 및 관계 규정과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등을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2018.07.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02.0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